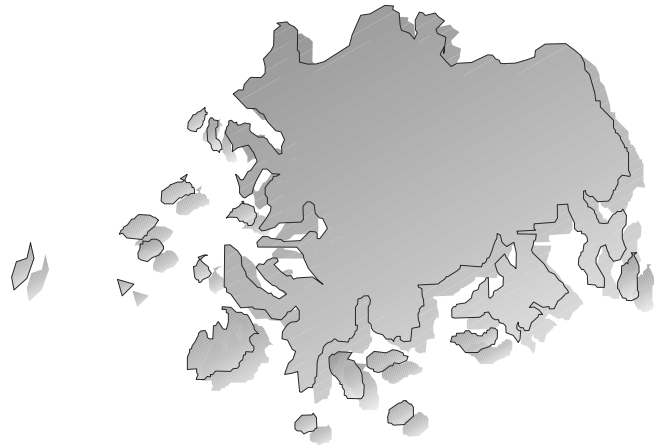


2007 국정감사자료집

서남권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영산강 간척지 장기임대 활용방안

2007. 10.



국회의원 김 홍 업

(대통합민주신당 무안군•신안군)

# 발 간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홍업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우리의 피와 땀을 통해 확보한 자랑스러운 땅, 영산강 간척지가 있습니다. 1970년 초에 시작되어 벌써 한 세대를 지나고 있는 영산강 농업 개발 사업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활용되어야 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그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그 방안을 강구하고자 지난 8월 27일 <영산강Ⅲ단계 간척지 활용방안 토론회> 토론회를 통해 지역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살펴보면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는 기존 방식대로 분양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전라남도과 지자체는 기업도시부지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환경단체는 해수유통 등 환경보존 방안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은 농업목적의 장기임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산강농업개발사업의 완성은 낙후된 지역의 종합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 주민의 염원을 충분히 반영해가며, 아름다운 환경을 지켜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영산강 간척지를 장기 임대 농지로 활용하며 훗날 약속의 땅으로 남겨두고자 합니다. 지금은 장기 임대를 통하여 경지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농업특화 전략기지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할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국경과 지역을 넘어, 자본과 기업을 유치하고자 경쟁이 치열합니다. 영산강지역 공동운명체로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함께 실천해 나가는 것만이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는 옳은 길이 될 것입니다.

2007년 10월

국회의원 김홍업 (무안·신안)

2007 국정감사자료집

# 서남권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영산강 간척지 장기임대 활용방안

책임연구원 : 국회의원 김홍업 보좌관 박경정

국회의원 김 홍 업

(대통합민주신당 무안군 • 신안군)

# - 목 차 -

1. 영산강 Ⅱ, Ⅲ지구 간척지 현황	
가. 영산강 Ⅱ지구, Ⅲ지구 대단위 사업추진 현황	3
나. 영산호, 영암호, 금호호 수질관리 현황	6
다. 영산강Ⅱ·Ⅲ지구 공사조성 원가	10
라. 장기임대 민원에 대한 한국농촌공사의 검토의견	11
2. 간척지 활용방안에 대한 기존추진 상황과 활용방안	
가. 해남군 기업도시협의회 추진실적과 주장	12
나. 농림부의 무상양여에 대한 조희 의견	18
다. 장기임대 추진방안 모색	20
3. 장기 저가 임대 추진 관련 법률 제·개정 방안	
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방안	30
나. 현행 「농어촌정비법」과 법령상 장기 임대 가능 여부	34
다. 「친환경생태농업진흥특별법」 제정 방안	35
3. 서남권 발전계획 관련 현황	
가. J프로젝트	44
나. S프로젝트	44
다. 서남권 발전계획	45
라. 「서남권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 제정 관련 검토	47
마. 특별법 제정 현황	50
별첨 : 영산강유역 농업개발 추진현황	55

< 표 >

영산강(Ⅱ)지구 사업추진현황 .....	3
영산강 Ⅲ지구 사업추진현황 .....	4
영산강(Ⅱ·Ⅲ)지구 간척지 분양실적 .....	5
영산강 Ⅲ지구 분양계획 (위치 및 면적) .....	5
영산강 Ⅲ지구 분양계획 (분양대상토지) .....	5
영산호, 영암호, 금호호 수질 조사지점 .....	7
년도 별 담수호 (COD) 수질현황 .....	9
영산강(Ⅱ)지구 공구별 공사조성 원가 .....	10
영산강(Ⅲ)지구 기 분양 매각된 공구별 공사조성 원가 .....	10
영산강(Ⅱ)지구 매각에 따른 자금회수 실적 .....	10
한·일 논벼 생산비 비교 .....	21
농촌인구의 변동 추이(통계청, 농림부) .....	22
농촌인구 변화 및 고령화 추세 .....	23
농지관리기금 운용수익률 .....	26
농지관리기금의 조달과 운용내역 .....	27
서남권 발전계획 .....	27
서남권 종합발전 주요 사업과 투자액 .....	45
지역 관련 특별법안 비교 .....	52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비교 .....	53
경제특구별 비교표 .....	54
영산강유역 농업개발 단계별 추진현황 .....	55

< 그림 >

영산호, 영암호, 금호호 수질 조사 위치도 .....	7
서남권 발전계획도 .....	46
노무현 정부 들어 제정된 특별법 .....	51

# 1. 영산강 Ⅱ, Ⅲ지구 간척지 현황(한국농촌공사 자료제공)

## 가. 영산강 Ⅱ지구, Ⅲ지구 대단위 사업추진 현황

□ 영산강(Ⅱ)지구 사업추진현황(1978 ~ 2006년 : 28년 소요)

공구명	개발면적 (ha)	사업기간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총사업비	2006까지	2007계획	2008이후	
계	20,982		369,691	369,691	0	0	
영산강 하구둑	0	1978~1982	59,356	59,356	0	0	
2-1공구	1,788	1981~1984	10,638	10,638	0	0	
2-2공구	2,432	1981~1984	15,143	15,143	0	0	
3-1공구	1,861	1980~1984	8,069	8,069	0	0	
3-2공구	1,397	1980~1984	7,631	7,631	0	0	
4-1(A) 공구	0	1982~1985	5,705	5,705	0	0	
4-1(B) 공구	1,676	1984~1989	15,089	15,089	0	0	
4-2공구	1,295	1984~1991	29,209	29,209	0	0	
5-1공구	1,083	1981~1984	9,175	9,175	0	0	
5-2공구	858	1981~1985	7,328	7,328	0	0	
5-3공구	831	1981~1985	5,662	5,662	0	0	
6-1공구	967	1982~1987	8,998	8,998	0	0	
6-2공구	1,204	1985~1992	17,980	17,980	0	0	
6-3공구	379	1991~1998	23,465	23,465	0	0	
6-4공구	236	1991~1996	15,408	15,408	0	0	
7-1공구	658	1985~1991	10,664	10,664	0	0	
7-2공구	1,133	1985~1991	17,108	17,108	0	0	
7-3(A) 공구	201	1989~1991	3,462	3,462	0	0	
7-3(B) 공구	660	1993~1998	18,684	18,684	0	0	
7-4공구	1,074	1987~1995	27,261	27,261	0	0	
삼향공구	831	1993~1998	25,780	25,780	0	0	
영암 유휴지	418	2001~2005	27,876	27,876	0	0	

□ 영산강 Ⅲ지구 사업추진현황

공구명	개발면적 (ha)	사업기간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총사업비	2006까지	2007계획	2008이후	
계	15,538		701,158	501,645	55,100	144,413	
삼호1공구	727	1995~2001	61,902	61,242	261	399	
삼호2공구	1,424	1996~2002	54,036	53,571	59	406	
마산1공구	1,080	1997~2004	93,597	91,421	0	2,176	
마산2공구	703	2000~2006	69,227	68,713	370	144	
마산3공구	144	미착공	0	0	0	0	
산이1공구	1,220	미착공	0	0	0	0	해군기지 935ha 포함
산이2-1공구	713	2002~2007	44,607	24,454	13,023	7,130	
산이2-2공구	727	2003~2009	49,000	26,512	11,387	11,101	
영암1공구	600	미착공	0	0	0	0	
영암2공구	622	미착공	0	0	0	0	
화원1공구	927	1997~2004	67,207	65,137	65	2,005	
금호1-1공구	1,052	2000~2009	83,672	51,097	10,212	22,363	
금호1-2공구	895	2002~2009	62,184	27,844	9,071	25,269	
금호2-1공구	1,082	2003~2012	69,605	21,123	6,595	41,887	
금호2-2공구	584	미착공	0	0	0	0	
화원2-1공구	2,158	2004~2012	46,121	10,531	4,057	31,533	
화원2-2공구	880	미착공	0	0	0	0	

□ 영산강(Ⅱ·Ⅲ)지구 간척지 분양실적

(면적 : ha, 금액 : 백만원)

구 분	분양면적	분양금액	분양단가 (원/평)	분양년도
계	5,953	278,397		
영산강Ⅱ	4,188	179,429	14,160	98 ~ 99년
영산강Ⅲ-1 (삼호1·2공구)	1,765	98,968	18,540	2003년

□ 영산강 Ⅲ지구 분양계획

○ 위치 및 면적

(면적 : ha)

지구명	공구명	위 치	준공인가 면 적	분양계획 면 적	일시경작 기 간
계			1,950	1,469	
영산강Ⅲ-1	마산1	해남군 마산면	1,075	806	05 ~ 06 (2년)
영산강Ⅲ-2	화원1	해남군 화원, 문내, 황산면	875	663	04 ~ 06 (3년)

※ 분할준공인가 : 마산1공구( '05.05.26), 화원1공구( '04.12.29)

○ 공구별 투자사업비 : 158,593백만원

- 마산1공구 : 91,393백만원(조성원가 8,502원/m<sup>2</sup>)

- 화원1공구 : 67,200백만원(조성원가 7,676원/m<sup>2</sup>)

○ 분양대상토지

구 분	계		영산강Ⅲ-1(마산1)		영산강Ⅲ-2(화원1)	
	필지수	면적(ha)	필지수	면적(ha)	필지수	면적(ha)
계	1,650	1,469	866	806	784	663
답	1,556	1,424	858	802	698	622
전	58	30	5	2	53	28
잡종지	36	15	3	2	33	13

○ 분양예상가격 : 감정평가후 산정(2개 감정평가업자 감정가격 평균치)

○ 분양방법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4조의 자격자

- 분양방법(공개경쟁입찰) : 1~5ha 규모 구획단위로 분양하여 집  
단화 추진

## 나. 영산호, 영암호, 금호호 수질관리 현황

### □ 수질현황

#### ○ 상류지역 유입하천 수질현황

- 영산강 수질은 최상류인 담양에서 0.8~2.1mg/l로 환경기준 I~II등급의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다가 광주 합류지점인 우치부터 오염도가 증가하기 시작, 인구밀집 지역인 광주시를 통과하면서 하류로 갈수록 오염도가 증가

#### ○ 담수호 수질현황

- 06년도 6월말 현재 영산호, 영암·금호호는 호소수질환경기준(COD) III등급의 수질로서 농업용수수질기준(IV등급)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수질 측정 기관 :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 매년 환경영향조사 보고서를 작성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

### □ 조사 시기 : 매년 조사

< 2006년도 >

- 1차조사 : 2006년 4월
- 2차조사 : 2006년 7월
- 3차조사 : 2006년 10월
- 4차조사 : 2006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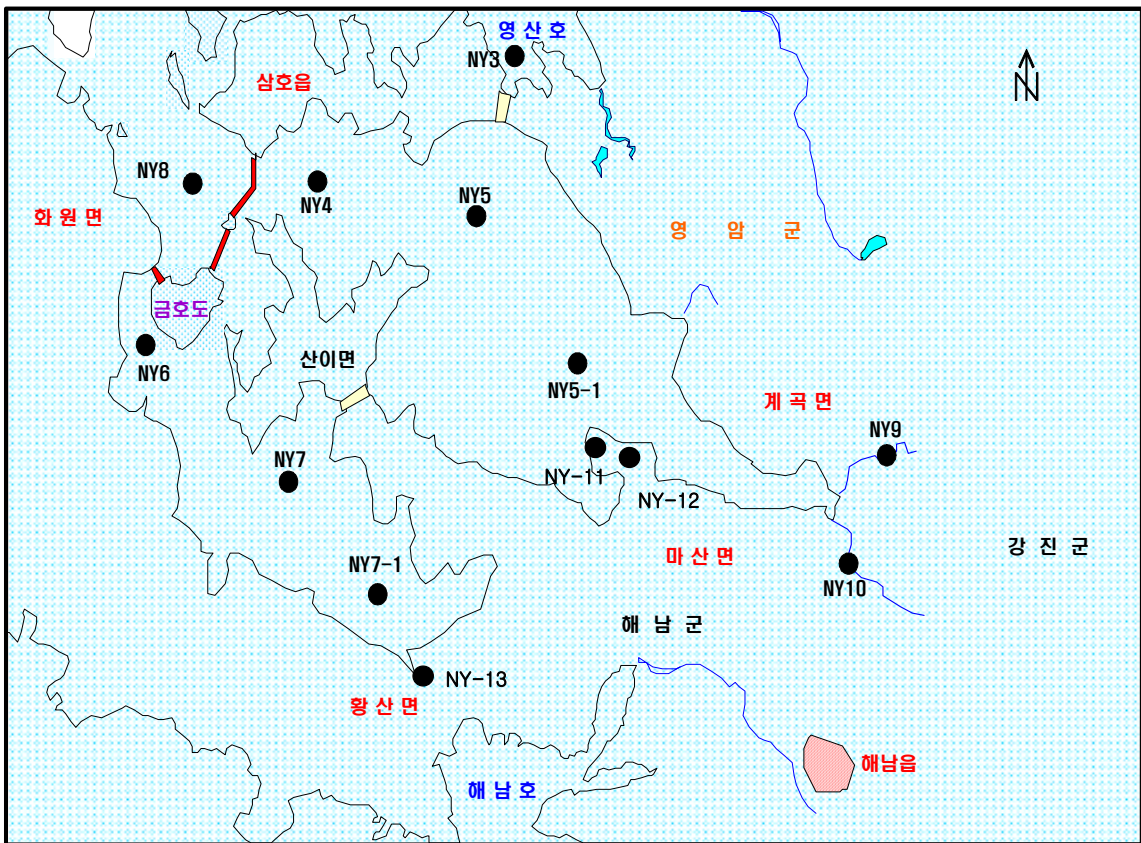
### □ 조사 지점

- 수질조사 지점은 유입하천, 담수호, 해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지점수는 유입하천 5지점, 담수호 7지점, 해역 1지점 등 총 13개 지점이다. 담수호는 영산호 1지점, 영암호 3지점, 금호호 3지점을 각각 조사하였음

< 수질 조사지점 >

수역	지점번호	조사위치	비고
영산호	NY-3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영암연락수로 앞	호 연락수로 앞
영암호	NY-4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황도앞	배수갑문 앞
	NY-5 NY5-1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영암연락수로 앞 해남군 계곡면 잠두리 뜯섬 앞	호 중류부근 호 상류부근
금호호	NY-6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 흑두~신흥앞	배수갑문 앞
	NY-7 NY7-1	해남군 황산면 관춘리 금호1호 연락수로 앞 해남군 황산면 연당리 앞	호 중류부근 호 상류부근
해역	NY-8	해남군 화원면 영호리앞 해역	방조제 의해
유입하천	NY-9	해남군 계곡면 성진리 계곡천보	영암호 유입하천
	NY-10	해남군 옥천면 신계리 옥천천보	천
	NY-11 NY-12	해남군 마산면 마산1공구 배수로 해남군 마산면 마산1공구 배수로	배수로
	NY-13	해남군 우항리 금호호 유입하천	금호호 유입하천

< 수질 조사 위치도 >



□ 조사 방법

- 수질항목 중 수온, EC, pH, DO 등 일반항목은 현장에서 측정·분석하였고 BOD, COD, SS, T-N, T-P, 중금속항목 등은 시료를 채취 후 실험실로 운반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법에 준하여 실내시험 분석하고 있음

<수질항목별 분석방법>

- 수온, pH, Electric Conductivity(전기전도도), DO(용존산소)
  - 현장에서 YSI 6920(YSI Incorporated. Multi-parameter Water Quality monitor, USA)를 이용하여 측정
-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 Winkler's Azid변법에 의한 20℃ 5일간 산소소비량을 분석
-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 저염농도시료 : 산성  $\text{KMnO}_4$  산화법
  - 고염농도시료 : 알칼리성  $\text{KMnO}_4$  산화법
- SS(부유물질)
  - 유리섬유여지(GF/C)로 여과후 중량법에 의해 산출
- T-N(총질소)
  - 자외선흡광광도법(Hewlett Packard 8453)으로 실내분석
- T-P(총인)
  - 흡광광도법(Hewlett Packard 8453)으로 실내분석
  - 분광광도계(Auto Analyzer 3, Bran+Luebbe)으로 실내분석
- 중금속류(Zn, Cu, Cd, Pb, Mn 등)
  - 원자흡광광도계(Varian 400Z) 및
  - 분광광도계(ICP : JY ULTIMA2)에 의한 실내분석

□ 조사 결과

<년도 별 담수호 (COD) 수질현황>

(단위 : mg/ℓ)

지 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3월	2006.6월
상류(담양금월교)	1.4	0.8	0.8	1.0	1.2	1.5	2.1	1.2
중류(나주대교)	6.5	6.2	5.6	4.8	6.1	5.3	6.2	4.8
하류(영 산 호)	6.3	6.7	5.8	6.3	5.3	5.4	4.7	5.9
중류(영 압 호)	4.6	5.0	4.6	5.0	4.7	4.6	3.4	3.9
중류(금 호 호)	5.0	4.2	4.8	5.6	5.3	5.6	3.8	3.3

※ 호소 수질기준 : 농업용수(Ⅳ급수) COD 8.0mg/ℓ 이하

□ 수질관리 방안

- 영산강하구연, 영암호, 금호호 방조제의 배수갑문을 적절히 조작하여 담수호의 물순환을 촉진하였고 주기적인 환경정화활동 및 환경오염원 관리를 시행
  - 그리고 영산강(Ⅱ·Ⅲ)지구 유역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산강 지구 담수호 수질·환경관리 협조요청과 영산강상류, 골재채취업 수질·환경오염방지 협조를 요청
- 배수로는 평상시에도 0.2m 이상 수심이 되도록 계획하여 배수로 기능 및 습지조성으로 영농으로 인한 유해성분 최대한 정화 후 담수호에 유입
- 배수로 말단부에 저류지를 조성하여 영농으로발생한 유해한 성분을 일차 정화 후 담수호에 유입
- 배수로 사면을 친환경적인 그린매트 설치
- 착공된 공구의 기존 갯골을 보전습지로 조성함으로써 생태계보존, 수질 개선 및 철새도래 서식지 조성

다. 영산강Ⅱ·Ⅲ지구 공사조성 원가

□ 영산강(Ⅱ)지구 공구별 공사조성 원가

(단위 : 백만원)

공구명	투자사업비	개발면적(ha)	공사기간	조성원가(원/평당)
계	230,261	6,930	'82 ~ '05	11,000
6-1공구	17,280	967	'82 ~ '87	6,000
6-2공구	28,292	1,204	'85 ~ '92	8,000
6-3공구	26,711	379	'91 ~ '98	23,000
6-4공구	17,429	236	'91 ~ '96	25,000
7-1공구	16,300	658	'85 ~ '91	8,000
7-2공구	26,812	1,133	'85 ~ '91	8,000
7-3(A)공구	5,184	201	'89 ~ '91	9,000
7-3(B)공구	24,337	660	'93 ~ '98	12,000
7-4공구	36,460	1,074	'87 ~ '95	11,000
영암유휴지	31,456	418	'01 ~ '05	25,000

※ 투자사업비는 공구별 실 투자사업비로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음

□ 영산강(Ⅲ)지구 기 분양 매각된 공구별 공사조성 원가

(단위 : 백만원)

공구명	투자사업비	개발면적(ha)	공사기간	조성원가(원/평당)
삼호1·2공구	136,316	2,151	'95 ~ '02	21,000

※ 투자사업비는 삼호1·2공구 실 투자사업비로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음

□ 영산강(Ⅱ)지구 매각에 따른 자금회수 실적

○ 징수금액 : 76,236백만원(42.5%)

(금액 : 백만원)

년도별	1998	1999	2000	2001	2002
금액	10,893	8,874	2,440	2,886	4,542
년도별	2003	2004	2005	2006	합계
금액	8,139	9,738	10,731	17,993	76,236

## 라. 장기임대 민원에 대한 한국농촌공사의 검토의견

### (가) 영산강 Ⅲ지구 무상양여에 대한 검토

#### < 근거 조항 >

- 「농어촌정비법」 등 무상양여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준공전은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규정

\* 정비법시행령 13조, 종전 공유수면매립법 20, 29조)

### (나) 영산강 Ⅲ지구 장기임대 민원에 대한 검토의견

#### □ 공사의 입장

- 매각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임대 및 매각에 따른 농지관리기금 결손, 농지규모화 실현가능성 등 장단점을 고려하여 장기임대(농어촌정비법 개정) 또는 매각 여부 검토 추진

#### ○ 개선방안

- 임대 영농의 절차와 임대료 및 임대기간의 기준 등을 마련

#### ○ 공사의 조치계획

- 임대 영농의 대상자, 임대료 및 임대기간은 농어촌정비법령 제도 개선

※ 한국농촌공사 자료 작성 및 제공(2007.1.17.) : 한국농촌공사 사업관리처 강성면 차장(420-3668), 유명규 차장(420-3693)

## 2. 간척지 활용방안에 대한 기존추진 상황과 활용방안

### 가. 해남군 기업도시협의회 추진실적과 주장

(해남군 기업도시협의회 이정목 회장이 「J-project 성공을 위한 조건」으로 2006년 12월 20일 주장한 내용을 중심으로 재작성하였음)

### □ 주장 요지 : 영산강 3단계 간척지(3천만평)를 전라남도에 무상 양여하고, 전라남도는 지역주민에게 장기 저가 임대해야

#### (1) 해남 간척지(영산강 3단계)의 무상양여(장기임대) 추진상황

- (가) 1993년(영암호-12,800ha)과 1995년(금호호-7,800ha) 영산강 3단계 간척지 물막이 공사 완료(새만금의 절반 규모)
- (나) 2001년 농업개방과 환경문제로 ‘친환경생태농업진흥특별법’을 16대 국회에 청원했으나, 탄핵 등에 의한 임기 만료로 2004년 5월 29일 자동 폐기.<sup>1)</sup>
- (다) 농림부의 해남주민 기만한 하나의 사례.
  - 2003. 12. 11.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간척지 관련회의<sup>2)</sup>에서 장기임대를 약속하였으나 2007년 2~3월 분양예정.
- (라) J-Project(관광레저형기업도시) 선정(2005. 8.)
- (마) 2006.10.25 해남·진도 국회의원 보궐선거 채일병 후보 선거공약
- (바) 2006.11. 간척지의 활용에 대해 해남군민 67,000명이 정부에 청원(영산강 3단계 간척지 전남도에 무상양여, 도는 지역민에게 장기저가임대)
- (사) “영산강3단계간척지 무상양여에 관한 청원” 입법 발의(채일병 의원. 2006. 12.12. 국회 제출 완료, 2007년 2월 국회 심의 예정) ⇒ 영산강 간척지는 친환경특구로 지정 지역농민에게 되돌려져야 한다, 농림부의 정책이 농림부를 위한 정책이어서는 안 됨.

1) 박종기 외, 3,649명(문서번호:9710100-2004-1853)

2) 2003년 12월11일, 국회 소회의실, 국회의원, 청와대, 행자부, 국방부, 농림부, 지역민 등이 참석. 농림부 용수과장이 “영산강3단계간척지 화원공구와 마산1공구가 끝난 곳부터 차례로 지역민들에게 장기임대를 하여 주겠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고 말함. 문서로 확인 요구 하자 “문서화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약속을 어기고 2007년4월 분양계획(농촌공사.2006.11)

- (아) 2007년 1월 10일 채일병 국회의원과 박희현 해남군수가 농림부 방문하여 장기임대 민원에 대한 추진방안 협의
- (자) 2007년 1월 15일 전라남도 농정국장이 농림부에 장기저가임대 정식요구
- (차) 2007년 8월 27일 영산강Ⅲ단계 간척지 활용방안 토론회 개최 (유선호 김홍업 채일병의원 주최)

(2) 간척지의 특징과 환경문제

- (가) 전국 7대 간척 담수호는 친환경농산물인증제를 받을 수 없는 수질.<sup>3)</sup>
- (나) 시화호 수질개선을 위해 2,000억 원을 투입했으나 효과가 없음.
- (다) 간척지 짘<sup>4)</sup>, 수질이 나쁘면<sup>5)</sup> 미질이 떨어짐.
- (라) 2003년 이후 매년 휴경지 4만 ha 이상 증가, 휴경지의 상당부분이 유휴농지.<sup>6)</sup>
- (마) 농림부에 간척지 개선 방향에 관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으나 묵묵부답.
  - 농림부는 농어촌정비법만 주장할 뿐 농민의 삶과 무관하다는 반응.
  - 친환경적인 공사로 약 3천억원 이상 절약방법제시(2000년)도 묵살.
  - 과도한 공사(예, 어떤 곳은 배수로 시멘트 사면 공사비로 약 32% 추가 지출)
  - 농림부의 호소 및 농지관리로는 환경문제 해결할 수 없음.
- (바) 주민들 간척지 농사에 대해 부정적 시각.
- (사) 1984년 용역 평가서에 영암호·금호호 부영양화 예측<sup>7)</sup>
- (아) 간척지 호수 관리가 농림부, 기업체, 해양수산부, 전남도로 나뉘는 문제 발생<sup>8)</sup>

3) 농림부, 국정감사 자료.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보고서'에 의하면 7대 간척 호수(평택호, 남양·삼교·대호·주남·간월·영산)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됨.

4) 이계임. 짘 소비행태 분석. 농촌경제연구원. 2004.12

5) 함진관. 관개수질과 농토양오염이 짘 안전성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 강원대. 1999.

6) 김홍상. 유휴농지의 다원적 활용과 계획적 관리 방안 제시. p.150. 2006.

7) 농업진흥공사. 영산강3지구 농업종합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서. pp.210-211, 1984. 12.

- (자) 영암호와 금호호에 매년 심한 녹조 발생, 바다에는 적조 발생.
- (차) 2004년 호수 물이 썩어 보톡스균으로 11종의 새 1,000여 마리가 죽음
- (카) 환경분야 낮은 점수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1차 지정 실패.
- (타) 관광레저 조건 충족을 위해 물은 2등급 이상이 되어야 함.
- (파) 박준영 전남도지사도 수질 문제 해결 위해 하구언 개방을 제시<sup>9)</sup>

### (3) 농림부의 비경제적인 간척지 관리시스템

- (가) 농지관리 기금의 운용 이율이 3%대<sup>10)</sup>
  - 전남도에 양여하고, 임대료만 받아도 3% 이율 보전이 충분함.
- (나) 간척지 개답공사 사례에서 보듯 가장 비싼 가격의 공사 예상.
- (다) 간척지를 일반분양하거나, 농림부 관리시스템으로는 기업도시 성공할 수 없음.

### (4) J-Project 성공의 선결조건

- (가) 토지 : 일반분양일 경우 간척지의 땅 투기장화가 명약관화.
  - 수질 관리 등을 위해 개발 예정지구 이외의 간척지도 개인 소유 불가.
- (나) 환경 : 깨끗한 물과 경관.
- (다) 주민 : 주민이 참여하여 개발주체가 되어야 개발이 성공할 것임.

### (5) 간척지를 전라남도에 무상양여

- (가) 1993년8월 개최됐던 대전 세계박람회의 사업부지 양도·양수 과정에서 정부가 토지공사로부터 외상 매입한 부지 일부를 대통

8) 현행 체제로 간척호수 상류는 농림부, 하류는 기업체(예상), 배수갑문은 농림부, 바다는 해양수산부가 관리도 록 됨. 환경 문제 발생 시 서로 책임을 회피. 전라남도가 일괄 관리 필요.

9) 도의회 답변에서 “영산호가 농업용수로 쓸 수 없다면 물을 가둬 둘 필요가 없다”면서 “하구언을 터서 바닷물이 적당한 수위로 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말함(광주일보.2004.12.7일)

10) 농림부의 2006.9. 국정감사 제출자료 참고.

령 결재를 거쳐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대물 변제하는 방식으로 지원<sup>11)</sup>).

(나) 이스라엘 대기업의 야곱 부사장이 “서·남해안이 지중해보다도 더 아름답고 잠재력이 크다” 며 “3억 달러 투자 하겠다” 고 밝혔으나, 용지의 장기임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실패<sup>12)</sup>).

(다)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나라들 중에서 토지 임대 방식으로 개발에 성공한 사례들이 많음.

- 미국 뉴욕의 맨해튼은 좋은 예, 맨해튼의 초기 개발이 토지를 임차. 20세기에 들어서도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록펠러 센터, 아스토리아 호텔 등 유명한 건물이 임차 토지에 건설.

- 휴양지로 유명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팜스프링도 개발회사가 지주인 인디언 토지를 임차하여 성공적 개발<sup>13)</sup>.

- 중국 수준의 임대료로 우리 산업단지 50년 간 임대<sup>14)</sup>.

(라) 수도권과 똑같은 조건이라면 땅끝 해남은 접근성 때문에 경쟁력 상실<sup>15)</sup>

(마) 현재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적용된 지역에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음.

- 장기국채 이자율은 4.76%(2006.11.24.)정도, 기업의 투자 수익률은 여기에 +  $\alpha$ , 결국은 10% 이상 되어야 기업체가 투자할 것(국토연구원, 2005).

(바) 간척지를 전남도에 무상양여하고 이를 기업체에 장기저가 임대하여 기업체의 부담이 최소화 되어야 기업 투자 가능.

(사) 장기저가임대 실패시 농림부서 환수도 가능.

(6) 전라남도는 지역민에 장기 저가 임대(기업도시 이외의 지역)

(가) 농림부에서도 농민의 재정부담 증가로 간척지를 분양보다 임대 방식으로 전환 주장<sup>16)</sup>

11) 광주일보, 2006. 12. 7. J-프로젝트 간척지 ‘무상양도’ 해법 있다.

12) 서재경, 서·남해안 포럼, 2006.12.8.

13) 반영운,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의견, p.68, 2006. 11.

14) 재정경제부, 임대전용 산업단지 제도 도입 및 시행방안, 2006. 4.6.

15) 한국경제신문, 골프 양극화 현상, 2006.11.21

16) 농림부, 간척지 이용에 관한 연구, 1991. 12. 임대료는 평균수확량의 12.5%~15%수준이 타당하다고 함.

- (나) 네덜란드의 경우 간척지는 매매보다 임대(40년)가 일반적 경향<sup>17)</sup>
- (다) 농림부도 장기저가임대의 필요성 시인<sup>18)</sup>
- (라) 영산강 3단계 간척지 평당 분양가격은 약12,000~13,000원.
  - 임대료는 평당 120~130원 사이로 장기임대 가능.
- (마) 2003년 중국쌀 330원/kg과 국내쌀 2,000원/kg로 6배 차이(농민신문. 2006.11.22)

(7) 기업도시 성공을 위한 도시계획

- (가) 성공적인 세계적 관광도시 공통성.
  - 높은 녹지율, Storytelling(이야기 거리)이 있고, 지역민이 참여.
- (나) 도시는 철학과 정체성(Identity)이 있어야 함.
  - 물의 도시 사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이탈리아 베니스, 캐나다 퀘벡.
- (다) 영산강 3단계 간척지의 가능한 컨셉.
  - 물의 도시(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원은 해수면보다 13피트(3.9m) 스키폴 공항 5m 낮음. 영산강 3단계 간척지 1.5m 낮음)
- (라) 간척지 특징을 활용하는 도시계획이 필요.

(8) 지역민이 요구하는 영산강 3단계 간척지 3천만평 활용방안 계획

- (가) 시범사업지구(1,000만평)
  - 가경작지<sup>19)</sup>로 조성원가 현재 약 5,000원/평
- (나) 친환경농업지구(마산1~2공구. 540만평)<sup>20)</sup>
  - 저비료·저농약으로 집단화하여 친환경농법으로 브랜드와 수질 개선 효과.
- (다) 자연수산물 양식장(270만평)<sup>21)</sup>

17) 상계서. p.116. 임대료는 토지가격의 2% 정도

18) 농민신문.2006.5.3.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에 따라, 매입한 농지는 농가에 5년간 임대하고 농가가 희망할 경우 경영평가를 거쳐 3년간 연장도 가능. 연간 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 이내에서 차등 부과

19) 농민부담(당시 평당 300~500원)으로 간척지를 기계로 사용하여 만든 논.

20) '자연환경+농특산물+전통문화'를 테마로 먹을 거리+볼 거리+할 거리+놀 거리+일거리+팔 거리 등 8거리 테마자원개발

21) 전승수. 2006. 금호호 중간부문에 제방을 설치하고 수문을 자동개폐. 기수지역에서 어류양식지역 조성

- 쌀농사 짓는 것보다 자연양식이 경제성에서 최소 3배 이상.<sup>22)</sup>
- 갯벌관광 하구
- (라) 실버클러스터(산업지구 1,000만평)<sup>23)</sup>
  - 자족도시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미래 산업이 필요.
- (마) 스포츠 단지(270만평)
  - 남향이어서 따뜻하고 북서풍을 막아주는 언덕이 있어 스포츠 동계훈련장으로 활용이 가능.

## (9) 결론

- (가) 통합적 유역관리와 기업도시의 성공을 위해 영산강 3단계 간척지를 전라남도에 무상양여 하여야 함.
- (나) 깨끗한 수질은 J-프로젝트의 선결조건.
- (다) 수질 개선을 위해 해수유통이 유일한 대안.<sup>24)</sup>
- (라) 도(道)는 지역민들에게 장기 저가임대 하면서 친환경농업특구 지정 가능.
- (마)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요함과 동시에, 살기 좋은 지역에서 살 권리가 있음.<sup>25)</sup>
- (바) 개발의 이익금을 지역에 환원해야 함<sup>26)</sup>.
- (사) 투자유인을 위한 장기과제(발제자 의견 추가)는

첫째, 기업투자 위축의 7대 악재 극복방안 수립

① 반기업정서로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의 퇴조, ②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잦은 노사분규와 인건비 부담 가중,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노동질 저하, ③ 기업규제(출자총액제 8대 계열기업 14조, 수도권 규제 8조원 규모 투자 못함 :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장)로

22) 해남군. 2006. 해양수산물.

23) 전남은 전국 평균 일조량보다 10%가 많고, 남해안은 30%가 많음. 외국의 경우 노후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 정년퇴직 2년 남으면 부부가 1개월, 정년퇴직 1년 남으면 2개월 노인복지시설에서 쉬게 함.

24) 네덜란드 브라우 박사와 독일 크라우 박사는 “영산강3단계 간척지는 반드시 썩을 것이다. 방법은 해수유통밖에 없다”고 말함. 금호호 저수량(1억2천만 톤)과 비슷한 네덜란드 휘어스호는 2006년에 폭 3m, 길이 5m인 제방을 뚫어 해수를 유통시키자 3개월 만에 정화가 가능했다. 우리나라도 새만금, 화옹호, 시화호가 수질문제 때문에 해수를 유통시키고 있다.

25)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6.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26) 시화호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멀티테크노벨리 첨단복합산업단지 317만 평 분양금액에서 남은, 약 4천5백억 원을 안산지역 대기 및 수질개선을 위해 전액 선투자.

투자 기피, ④ 기업도 나름대로 자체적인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지 못하여 투자 보류(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거나 자본회수가 제대로 안 되어 투자 실패 가능성 증대, 부동산 보유가 더 높은 수익률 실현), ⑤ 현 정부의 정책 일관성 부족과 투자비전 미흡으로 투자 관망, ⑥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매수·합병(M&A)에 대비하는 현금 비축, ⑦ 산업구조조정(고부가가치 성장산업화)을 견인하지도 뒷받침하지도 못하는 비현실적 인재공급과 교육체계 실태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기업투자는 위축되고 있음.

둘째, 수질 등 환경관리방안은 필수적임. 현재의 영산호, 영암호, 금호호의 수질이 악화 될 경우, 어떠한 사업이나 투자유치가 어렵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요구됨.

#### 나. 농림부의 무상양여에 대한 조회의견

(2006년 12월 20일 민주당 정책위에서 농림부 기반정비과로부터 FAX수신한 정부측 검토의견이므로 공식의견으로 규정할 수 없음)

F1관련 하여 간척지 무상양여 또는 장기임대를 농림부에 조회한 결과, 무상양여에 대해서는 농림부의 의견이 불가였음.

#### <답변서 : 농림부로부터 수신한 내용 2쪽>

건의 개요

○ 건의일자 : 2006.10.02(국회사무처 접수일)

○ 건의자 : 해남군 기업도시협의회 의장(이정목)

○ 건의 내용

-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영산강 3단계 간척지를 조속히 전남도에 무상양여

□ 기업도시 시범사업 현황

— <해남·영암 관광레저 기업도시개발 시범사업> —

- 위치 : 전남 해남군 산이면, 영암군 삼호읍 일원
- 면적 : 간척지1,000만평(관광레저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정 2005.8.25)  
\*전남도 J-project 구상 29,420천평(간척지 22,260, 육지 7,160)
- 개발기간 : 시범사업-2006~2012년(J-project 2006~2016년)
- 사업비 : 시범사업(105,241억원), J-project(35조원)
- 제안자 : 국내외 15개 기업체(전라남도지사)
- 주요시설 : F1 자동차경주장, 컨벤션센터, 마리나, 호텔, 골프장 등

□ 농림부의 검토의견

○ 간척지 무상양도 : 수용곤란

- 영산강 3단계 간척지는 농지개발기금으로 농지(논)를 조성하여 농업인 등 분양대상자에게 유상으로 매각할 계획이었음.
- 농지관리기금은 농지를 전용하는 전 국민이 납입한 대체농지조성비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동 기금으로 새로운 농지를 조성하여 농업인들에게 유상으로 매각하고 있음.
- 따라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기업도시개발사업자)에게 간척지를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은 법적, 제도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지만,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매각하는 농림부 입장에서 정책적인 배려도 어려운 사안임.
- 만약 무상으로 양도하였을 경우 간척농지 분양대상 자격자, 즉 지역의 농업인 등의 반대여론, 농림부 정책 질타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됨.
- \* 우리부에 지역 농업인들이 농지를 조성하여 매각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민원도 다수 접수되고 있음.
- \* 전라남도도 F1경주장 부지를 도비로 유상 매입한다는 계획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바 있음.

○ 전라남도에 간척지를 조기양도 : 수용 곤란

- 해남·영암 관광레저도시 개발 사업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이므로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된 경우 개발구역에 포함되는 간척지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함.
  - 우리 부는 간척지를 기업도시개발계획이 승인된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리 등을 양도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아닌 전라남도에 간척지의 조기 양도는 어려움.
- \* 전라남도는 개발사업시행자(전남개발공사 및 전경련 컨소시움)가 아님.

<참고>

- 동일 내용의 민원이 우리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등에 제출되어 우리부가 위와 같은 검토의견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다. 장기임대 추진방안 모색**

더 이상 농지관리기금법의 법적 문제와 행정절차를 고집하는 농림부의 편협 행정이 한국 농업과 해남지역 농업발전을 저해하는 행정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됨. 전남도에 무상양여나 장기임대를 요구하는 67,000명 해남 지역주민의 서명요구(2006.9월 서명시작, 11월 6개 부처 제출)에 대해 적극 수용해야 국민을 위한 행정과 정부로서 존재 의의가 있음.

□ 장기 저가 임대의 필요성 6가지 검토

(1) 토지용역비 경감으로 농업소득증대

토지용역비가 쌀 생산비의 경우 40.5%를 차지하고 있어, 농지가격 부

담이 농업소득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농림통계 자료에서도 보여주고 있음(표1). 농지구입자금의 경우 금리 3%, 4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도시민들의 주택구입조건이 통상 20년 대출기간인데 비교하면, 불리한 용자조건임.

원리금이 동시에 상환되는 5년차부터는 적자 요인으로 농업경영의 부담이 되고 있음(현장조사 사례 : 충남 당진 대호간척지의 쌀전업농 김종식 회장의 경우, 3,000평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5,200,000원 수준, 조수익 9,000,000원대에서 생산비 공제하면 적자). 따라서 장기임대로 전환하여 토지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농업소득을 증대시켜야 함.

<한·일 논벼 생산비 비교(2005년도 기준, 10a당, 농림통계연보)>

	한 국		일 본	
	금액(원)	구성비(%)	금액(엔)	구성비(%)
종묘비	11,484	2.0	3,704	2.5
비료비	28,515	4.9	7,802	5.2
농약비	26,321	4.5	7,016	4.7
기타 제재료비	7,259	1.2	5,050	1.4
영농광열비	3,548	0.6	3,455	2.3
수리비	559	0.1	-	-
토지개량및수리비	-	-	5,821	3.9
농구비	43,862	7.5	25,525	17.2
영농시설비	1,290	0.2	4,845	3.3
축력비	14	0.0	-	-
노력비	106,174	18.1	43,884	29.5
자가	95,586	16.3	41,833	28.1
고용	10,589	1.8	2,051	1.4
기타	92,338	15.7	16,613	11.2
<b>소계</b>	<b>322,484</b>	<b>54.9</b>	<b>120,715</b>	<b>81.1</b>
토지용역비	238,165	40.5	20,042	13.5
자가	131,429	22.4	15,802	10.6
차용	106,737	18.2	4,240	2.8
자본용역비	27,246	4.6	8,051	5.4
<b>소계</b>	<b>265,411</b>	<b>45.1</b>	<b>28,093</b>	<b>18.9</b>
<b>합계</b>	<b>587,895</b>	<b>100.0</b>	<b>148,808</b>	<b>100.0</b>

(2) 장기임대를 통한 「경작농지의 대규모」 확대 추진

현재 농가인구 실태를 보면, '0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9.3%(농촌 18.6, 도시 7.2)인데 비해 농가인구는 30.8%로서 초고령 단계 진입한 상태입니다.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어, 신규 농업투자(농지구입, 새로운 농법의 도입, 대규모 투자 증대 등)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3) 농촌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 농촌인구 비율 : ( '80)41.9%→(' 90)25.9→( '00)19.9→(' 05)18.5

<농촌인구의 변동 추이(통계청, 농림부)>

(단위 : 천명, %)

구 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전국인구(A)	38,124	42,869	45,093	47,008	48,138	48,297
농촌인구(B)	16,002	11,102	9,572	9,374	8,764	-
농가인구(D)	10,827	6,661	4,851	4,032	3,433	3,304
농촌인구비율 (B/A×100)	41.9	25.9	21.2	19.9	<b>18.5</b>	-
농가인구비율 (D/A×100)	28.3	15.5	10.8	8.6	7.1	6.8

(4) 농촌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 '0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9.3%(농촌 18.6, 도시 7.2)인데 비해 농가인구는 30.8%로서 초고령 단계 진입

<농촌인구 변화 및 고령화 추세>

(단위 : 명, %)

구 분		전국(A)	도시(동부)	농촌(읍면부)	농촌거주인구(%)
1990	전체인구	43,390,374	32,290,055	11,100,319	25.6
	65세이상인구	2,162,239	1,158,570	1,003,669	46.4
	(비율)	5.0	3.6	9.0	-
2000	전체인구	45,985,289	36,642,448	9,342,841	20.3
	65세이상인구	3,371,806	2,001,341	1,370,465	40.6
	(비율)	7.3	5.5	14.7	-
2005	전체인구	47,278,951	38,514,753	8,764,198	18.5
	65세이상인구	4,365,218	2,746,833	1,618,385	37.1
	(비율)	<b>9.3</b>	<b>7.2</b>	<b>18.6</b>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 \* UN : 노인인구비율 7%(고령화사회), 14%(고령사회), 20%(초고령사회)

우리 농업은 최근 기상재해가 빈발하고 있고, 개방화로 인한 외국산 농수산물에 무분별하게 유입되며, 농업기술의 향상에 따른 생산과잉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 소비자의 기호도 변화에 따른 수요 변동 심화 등 농업소득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어, 안정적인 가격 지지를 기대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이 되고 있음.

정부는 국제경쟁력 배양 차원에서 전업농 육성, 영농규모화, 기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단시일 내 경지규모 확대를 통한 농업 규모의 경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농지구입의 「소유농지 규모화」 보다는 장기저가임대로 「경작농지 규모화」를 추진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중요하고 실익이 있음.

따라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장기저가임대를 통하여 경작지를 배분함으로써 경작면적을 늘림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이 타당함. 농업이 수지가 맞도록 규모를 늘리기 위해 장기저가임대를 추진해야 함.

#### (5) 지역브랜드화를 통한 지역농업특화 전략 구현

WTO/DDA협상에 따른 개방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시장통합의 가속화 추세에서 우리 농업의 살길은 크게 농업의 구조조정, 가격 경쟁력 배양, 품질고급화, 농어가 소득안전망 구축 등이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국제경쟁력 제고방안의 핵심은 우리 농산물의 상품으로서 가격과 품질이 뛰어나야 함.

영산호, 영암호, 금호호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특화된 농산물을 생산하여, 가격과 품질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육성하고 브랜드화를 추진해야 하는데, 대단위 농지의 장기저가임대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매우 효과적이고 필요한 방안임. 특히, 쌀의 과잉생산에 따른 대안으로 다양한 작목으로 전환하고,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지로서 역할을 가능하게 함.

장기저가임대 농지부터 이름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지로 육성함으로써 점차 영산호, 영암호, 금호호를 중심으로 한 영산강 지역의 고유 브랜드를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음. 이러한 브랜드화 시범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간척지 장기저가임대는 「영산강 하구 친환경농업 전진기지」, 「영산강 호수 농업 선진화 전략기지」로 지역특화를 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농지가 될 것임.

#### (6) 농지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

농지관리기금의 조성내역과 운용 내역을 보면, 운용수익률은 2004년도 3.03%, 2005년도 3.18%로서 은행에 예금하든지 단기금융상품에 예치함으로써 낮은 운용수익률을 보이고 있음. 2005년도 조달과 운용내역을 보면 1조 6,177억원 규모에서 자체수입 9,542억원 중 농지보

전부담금과 융자금원금회수, 정부로부터 800억원 출연금이 대부분임. 사용한 운용의 경우도 영농규모화사업과 농지조성사업에 대부분을 쓰고 있음.

새만금과 이곳 영산강 III지구 대단위사업이 끝나면, 더 이상 대규모 영농규모화사업, 농지조성사업이 없어, 대규모자금 투입이 마무리 되어 가면서, 농지관리기금 회수에 여유가 있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시기에 굳이 농지를 매각하여 하는 것 인지 의문이 제기됨.

현금화한 농지관리기금 중 여유자금의 운용 수익률이 3% 저리에 불과하다면, 더 이상의 매각보다는 땅을 장기저가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아 가는 것도 효율적인 농지관리기금의 운용방안이 될 수로 있다고 판단 됨.

<농지관리기금 운용수익률>

(단위 : 백만원, %)

연도	상품명 (장단기구분)	운용규모 (A)	운용수익 (B)	운용수익률 (B/A×100)
2004	기업자유예금등	66,533	1,860	2.80
	정기예금(단기)	11,298	437	3.87
	CD(단기)	2,336	81	3.47
	MMF(단기)	7,268	270	3.71
	합 계	87,435	2,648	3.03
2005	기업자유예금 등	55,851	1,684	3.01
	정기예금(단기)	6,776	254	3.75
	CD(단기)	6,776	252	3.72
	MMF(단기)	15,902	522	3.28
	합 계	85,305	2,712	3.18

자료제공 : 2006년 9월 국회 국정감사시 농림부 제출 자료

<농지관리기금의 조달과 운용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 결산(A)	2005 결산(B)	증감	
				(B - A)	%
조 달	○ 자체수입	925,770	954,259	28,489	3.1
	- 농지보전부담금	448,761	466,772	18,011	4.0
	- 융자금원금회수	358,022	373,499	15,477	4.3
	- 매각대원금회수	39,973	40,352	379	0.9
	- 일시위탁경작료	3,872	1,262	△2,610	△67.4
	- 기타이자수입등	75,142	72,374	△2,768	△3.7
	○ 정부내부수입	486,000	520,000	34,000	7.0
	- 정부출연금	100,000	80,000	△20,000	△20.0
	- 공자기금예수금	386,000	440,000	54,000	14.0
	○ 여유자금회수	134,337	143,494	9,157	6.8
합 계		1,546,107	1,617,753	71,646	4.6
운 용	○ 영농규모화사업	309,212	476,937	167,725	54.2
	- 농지매매	183,992	290,321	106,329	57.8
	- 농지임대차	121,505	183,891	62,386	51.3
	- 농지교환분합	3,715	2,725	△990	△26.6
	○ 농지조성사업	360,949	390,811	29,862	8.3
	- 서남해안간척	127,649	149,908	22,259	17.4
	- 대단위농업개발	228,000	234,992	6,992	3.1
	- 유희지개발	5,300	5,911	611	11.5
	○ 경상사업	2,916	7,476	4,560	156.4
	- 농지정보화사업	2,141	2,041	△100	△4.7
	- 농업진흥지역실태조사	-	4,024	4,024	순증
	- 농지오염방지조사	775	-	△775	순감
	- 농지포탈사이트관리	-	1,077	1,077	순증
	- 담수호수질개선시험조사	-	334	334	순증
	○ 기금운영비	39,088	40,790	1,702	4.4
	- 기금관리비	914	938	24	2.6
	- 사업운영비	38,174	39,852	1,678	4.4
	·영농규모화사업운영	35,748	37,143	1,395	3.9
	·농지제도교육홍보	1,425	1,470	45	3.2
	·조성토지매각관리	1,001	1,239	238	23.8
	○ 정부내부지출	690,448	565,639	△124,809	△18.1
	- 재특회계원리금상환	66,558	62,985	△3,573	△5.4
	- 공자기금원리금상환	623,890	502,654	△121,236	△19.4
○ 여유자금운용	143,494	136,100	△7,394	△5.2	

## □ 장기 저가 임대방식이 더 효율적인 토지이용방안

농림부는 간척농지를 전라남도에 장기 저가 임대하고 기존 운용수익률의 3% 이자만 전남도로부터 수취하고, 사용권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주어야 간척농지를 지역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가 추진하는 기존의 획일적인 쌀농사, 논 농지조성은 쌀값 폭락의 악재가 될 수 있음.

간척농지를 장기 저가 임대한 전라남도가 개발주체가 되어, 수질 환경 보호, 외자기업 유치,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다목적으로 추진하면서, 3% 이자부담 이상의 수익을 실현하여, 이자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사업 운용모델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낙후된 지역개발을 견인해야 함.

이 방안은 지역주민의 의사일치, 전라남도과 해남군의 추진력, 농림부와 농촌공사의 지원 등 5개 주체의 협력이 요구됨. 지속적인 분양매각으로 우리가 어업권보상만 헐값에 받고 빼앗긴 땅을 찾겠다는 강력한 지역주민의 의지와 우리 형편에 맞게 활용하는 지혜가 동시에 필요함.

## □ 지역종합개발계획과의 조화

영산강 Ⅲ지구는 우리 지역개발 청사진인 J-project의 중심지역으로서 서해안 개발의 각종 발전 및 남해안특별법 대상지역으로서 해양과 대륙 양쪽의 진출기지로써 응비할 수 있는 천혜의 지리적 위치를 갖춘 곳임. 가격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음.

따라서 영산강Ⅲ지구는 J-project종합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과 이용방안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하는데, 한번 일반인들에게 분양되어버리면 나중에 다시 더 비싼 가격에 수용하든지 아니면 큰 계획을 포기해야 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를 수 있음.

향후 큰 지역개발계획을 위해서는 장기 저가 임대 형태로 이용하다가

차후에 사유지화를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됨. 개인 사유지화를 보류하는 장기 저가 임대야 말로 해남지역의 거시적이고 장기발전전략상 필요한 방안임.

또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환경보전의 공익과 지역소득증대라는 지역 공동체주의의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하고 보전해야, 향후 더 큰 가치를 지닌 약속의 땅, 번영의 땅이 될 수 있음.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하는 땅으로 남겨두는 여유와 장기적인 안목이 요구됨.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의 양극화로 「신빈곤층」이 양산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듯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양극화가 진행되는 과정, 지자체 간 지역특화사업 경쟁에서 우리 지역 또한 발전에서 소외되고 경쟁에서 이기지 못할 경우, 우리 서남권 지역은 「신빈곤지역」으로 전략할 수 있음을 경각심과 위기감을 갖고 합심해야 함.

### 3. 장기 저가 임대 추진 관련 법률 제·개정 방안

□ 간척농지를 무상양여나 장기저가임대방안으로 추진하려면, 관련 법령의 뒷받침이 필요함.

현행 법령상으로도 가능한지, 법 개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하는지 다각도의 고찰이 필요함.

첫째, 관련법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과 기존 「농어촌정비법」·법령 적용 방안

둘째, 「친환경 생태농업 진흥특별법」안 제정 등 2가지 방안으로 추진할 수 있음.

#### 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방안

##### (1) 법안 개정 사유 및 방안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은 한국농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키고,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제1조 법의 목적)이나,

○ 현행법상 간척농지에 대한 무상양여 또는 장기저가임대를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으로 가능하거나 보장해주는 사항은 있지 않음.

따라서 동법 제44조(조성농지의 처분 특례) 국가는 「농어촌정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이를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조항에 지방자치단체(전라남도)를 포함하면 무상양여가 가능한 법률이 될 수 있음.

(2) 법 개정 시안 예시

한국농촌공사법및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일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07.1.

발 의 자 :채일병·김송자·김종인·김효석·  
손봉숙·신중식·이낙연·이상열·  
이승희·조순형·최인기

제안이유

간척농지에 대해 환경보전목적, 지역종합개발사업과 겹치는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목적, 현지 농업인의 영농규모 촉진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의 경우에는 무상양여 대상자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어, 이에 본 법을 개정하고자 함.

전남 해남군 주민들이 영산강Ⅲ단계 사업으로 조성된 간척농지를 장기임대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민원을 수용함은 물론, 간척농지를 기존의 매각방식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중장기적 다목적으로 활용하고자 장기저가임대를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간척농지의 무상양여 대상을 한국농촌공사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자 대상을 추가함(안 제44조).
- 나. 간척농지의 처분특례 대상자에 광역자치단체를 장기저가임대 대상으로 신설함(안 제44조).

## 법률 제 호

###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조성농지의 처분 특례) 국가는 「농어촌정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이를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또한, 환경보전목적, 대규모 지역종합개발사업과 겹치는 지역, 농지 규모화를 통한 농업소득증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무상양여하거나 장기저가임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신설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44조(조성토지의 처분특례) 국가는 「농어촌정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이를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44조(조성토지의 처분특례) (현행과 같음) <u>또한, 환경보전목적, 대규모 지역종합개발사업과 겹치는 지역, 농지 규모화를 통한 농업소득증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무상양여하거나 장기저가임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신설>	

##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 1. 재정수반 요인

### 2. 비용 추계 결과(예시)

○ 개정안 제44조에 무상양여나 장기저가임대 추가시 이를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의 협조, 전문가 진단 필요함.

○ 농지관리기금 결손액 추정치 미매각에 따른 결손추정 금액 : 88,140백만원(한국농촌공사가 예시한 산출 내역)

－ 결손금액 :  $1,469\text{ha} * 90\text{백만원/ha} = 132,210\text{백만원}$

\* 평당매각 추정단가 : 30,000원

－ 장기저가임대시 임대료(10년)

\*  $1,469\text{ha} \times 3\text{백만원/1ha} \times 10\text{년} = 44,070\text{백만원}$

\* 1ha당 임대료 : 지역관행임대료 추정 3백만원

### 3. 참고자료

○ 법 개정시 정부가 추가부담할 예산 내역

### 4. 작성자

○ 민주당 정책위 전문위원 박경정(☎788-2222)

○ 채일병 의원실 김병운 비서관(☎788-2252)

## 나. 현행 「농어촌정비법」 과 법령상 장기 임대 가능 여부

### (1) 현행 법령상 장기 임대 가능 여부 검토(한국농촌공사와 검토)

- 장기 임대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임대영농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음(사업시행자는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관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 임대 영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러나 지금까지 임대 영농의 절차와 임대료 및 임대기간의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임대 영농 사업을 실시한 실적이 없음
- 임대 영농 관련 법령의 내용
  - 조성토지처분대상에서 제외한 후 임대 영농(영 제13조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등 제3항 제4호 임대 영농사업)
  - 분양되지 아니한 간척농지를 전업농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게 임대(영 제15조 제4항)
- \* 임대료 및 임대기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함(시행규칙 제4조 제3항)
  - 조성된 매립지 등을 준공검사 전에 분양대상자격자에게 일시경작(영 제15조의 2)

### (2) 법안 개정 추진 여부 결정

- 개정사유는 『전남 해남군 주민들이 영산강Ⅲ단계 사업으로 조성된 간척농지를 장기 임대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간척농지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관리하여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장기 저가 임대 대상자에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확대하려고 본 법을 개정하고자 함.

## 다. 「친환경생태농업진흥특별법」 제정 방안

(국회 환경포럼 2003.4.18 정책자료에서 인용하여 재정리)

### (1) 법 제정의 필요성

□ 생물다양성 문제는 기후변화협약과 함께 21세기 전지구적 차원에서 환경문제의 중심적 화두가 되고 있음

○ 이미 OECD는 야생종 및 생태계 보전, 습지보전, 산림보호, 수자원관리 등의 분야에서 약 30종의 유인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발효되어 기후변화협약 이행 여부가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시되는 것처럼, 생태보전을 위한 국제협약 또한 국가간 교역에 점차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

○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적은 예산규모이기는 하나 농업과 연계하고 있음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제도)

○ 앞으로는 환경적,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생산활동과 연계하여, 환경보전이란 정책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고품질의 청정한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농업소득 증대와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한층 제고시켜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환경과 생태의 특성상 일정한 범위의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구역을 설정하여 환경·생태·농업이 같은 틀 속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관련 있는 농업부문과 환경부문 예산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생태계에서 직접 발생하는 가치와 생태계 보전으로 인해 영향받는 가치 등을 사회적 효용가치로 인정하여 친환경 생태농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별도의 「장기 임대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뒷받침하는 방식

## (2) 법안 전문 시안 예시

### [1] 제 1조 목적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환경보전이란 국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고품질의 청정 농산물 생산을 진흥함으로써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을 중심으로 농업·농촌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농업 네트워크의 중심지화)

### [2] 제2조 용어정의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이라 함은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친환경생태농업”이라 함은 농업과 환경 및 생태보전을 조화시켜 농업생산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농업으로서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환경·생태 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을 말한다.
3. “친환경생태농산물”이란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에서 친환경생태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4. “친환경설계”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4호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의 환경·생태 보전 조건에 부합하는 시공설계를 말한다.

### [3] 제 3조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의 지정조건

- ① 환경보전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당해 지역에서 친환경생태농업을 영위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규모의 영농지구
- ② 간척사업으로 조성중이거나 조성된 규모화·집단화된 영농지구(예정지를 포함한다) 중에서 환경보전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영농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친환경생태농업을 영위하기를 원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영농지구가 수질·토양 등 환경관련 법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4] 제4조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의 지정

-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농림부장관에게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 개발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 지정의 필요성
  3.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에 관한 개발운영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
  4. 개발운영사업의 시행방법
  5. 농지 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과 운영계획
  6.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③ 농림부장관은 제○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을 지정한다.
- ④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운영계획서와 제○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심의한 후 의결하여야 한다.
- ⑤ 농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의 개발운영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친환경생태농업에 관한 연구와 정책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친환경생태농업시범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위원회가 대상지역을 선정한다.

- ⑥ 농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5] 제5조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의 지정기준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위원회는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용수 등 기반시설의 공급수준
- 2. 환경 및 생태 조사에 기반한 환경 및 생태보전의 필요성
- 3. 자연환경보전법, 국토이용관리법,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등과 관련하여 환경생태적 보전 가치
- 4.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 및 영농인 등의 자발적 참여 수준
- 5.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특별구역의 농지 면적 등)

#### [6] 제6조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의 지정 해제

- ① 농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정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 지정 절차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농림부장관은 환경 및 생태의 여건이 당초 지정 기준에 미달 혹은 심대한 변화가 초래되었거나, 영농여건이 수질 및 토양

등 환경관련법에 의한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7] 제7조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의 체계적 관리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8] 제8조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에 관한 개발운영사업의 시행자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에 관한 개발운영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국가 소유인 경우에는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9조에 의해 설립된 자치영농협의회
2.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민간 소유인 경우에는 자치영농협의회 또는 영농조합법인

[9] 제9조 자치영농협의회 구성 및 운영

- ① 영농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등은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해 자치영농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자치영농협의회는 농림부장관이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을 지정·고시한 때로부터 당해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의 개발운영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 ③ 자치영농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며, 그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④ 자치영농협의회에 참여하는 영농인들은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치영농협의회결정으로 탈퇴 공시될 수 있다.

[10] 제10조 장기저가임대에 대한 특례

- ① 농림부장관은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관리·처분함에 있어서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불구하고, 친환경생태농업시범특별구역 또는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 지정과 친환경생태농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장기 임대 영농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장기저가임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제11조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에 대한 환경관리

- ① 환경부장관은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에 대하여 매년 환경 및 생태 기준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그 조사 항목과 절차에 관해서는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 위원회와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에서의 환경 및 생태 관리를 감시하기 위하여 민간환경관련단체로 하여금 외부환경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민간환경단체를 통한 환경감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제12조 친환경생태농업에 대한 교육훈련과 기술보급

- ① 농림부장관은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안의 영농인과 자치영농협의회 관계자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친환경생태농업에 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친환경생태농업의 교육훈련과 기술개발 및 보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위원회 산하에 친환경생태농업진흥연구소를 설치한다.

[13] 제13조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에 대한 지원

- ①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에서의 체류형 체험관광(farm stay), 생태관광(eco-tourism)을 진흥시키기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예: 도시민 참여를 위한 주말농장 구역의 조성, 생태관광시설 및 생태탐방 코스의 개발, 농촌콘도의 설치 등)
- ② 농업연수 및 교육시설의 우선적 설치(예: 농업연수원, 민족농업학교)
- ③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의 개발운영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법의 의제 조치
- ④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에서의 농업기반시설공사시 친환경설계의 우선적 시행
- ⑤ 친환경생태농업진흥연구소의 설치
- ⑥ 작목시험장, 종자연구소, 묘목장 등의 유치 지원
- ⑦ 친환경생태농산물의 유통기반시설 및 가공시설의 지원
- ⑧ 영농인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 및 영농인 체육시설의 설치(예: 임대 가능한 전지훈련장 조성 등)
- ⑨ 영농인 주거단지조성 지원
- ⑩ 자치영농협의회 전용시설 지원
- ⑪ 기타 농외소득 유발 시설 등 설치 지원

[14] 제14조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①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위원회를 둔다.
- ②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의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에서의 개발운영사업에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영농협의회간의 협조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③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 10인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농림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차관과 농림부차관이 된다
- ⑤ 당연직 위원은 농림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농업기반공사 관계자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⑥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⑦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및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⑧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제15조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기획단

- ①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기획단을 둔다.
- ②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기획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 2.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 3.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의 개발운영계획 협의
  - 4.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위원회의 의안 작성 등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위원회의 운영보좌
  - 5.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과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홍보 및 국제 협력
  -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③ 친환경생태농업특별구역기획단의 소속·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4. 서남권 발전계획 관련 현황

### 가. J프로젝트

-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로서 영암·해남에 3,000만평 레저타운 계획으로 총30만명 규모 총투자금액 35조원
- 1단계 사업기간은 2006 ~ 2012년, 위치는 전남 해남군 산이면 및 영암군 삼호읍 일원, 면적은 1,000만평(전경련지구 500만평), 계획인구 7만명(전경련 계획지구 2만5천명)을 계획하고 있음.
  - 주요시설은 F1경기장, 대학시설(자동차, 항공, 관광레저, 영상), 국제민간비행학교, 영상테마단지, 마리나, 호텔, 카지노, 엔터테인먼트, 골프장 등이며, 소요재원은 약10조원, 개발법령은 기업도시 개발특별법 적용을 받으며, 시행자는 4개 컨소시엄 15개 기업 참여 예정
- 2단계는 및 3단계 사업은 해남군 산이면 및 영암군 삼호읍 일원 면적 1,942만평에 걸쳐 2010년부터 2016년 추진하며, 주요시설은 역사문화재연 테마파크, 해양스포츠시설, 레포츠타운, 워터파크 및 스파, 쇼핑아울렛, 커뮤니티타운, 골프장 등을 구상하고 있음.

### 나. S프로젝트

- 2002년도에 시작한 서남해안개발계획으로 싱가포르 자본의 투자를 전제로 구상된 개발계획(목포·무안·신안·영암·해남 등 전남 서해안지역을 포괄 4억만평 범위로 J프로젝트 보다 훨씬 넓은 계획).
- 2005년 한·싱가폴 정상회담 의제로 채택되기도 하였으나 행담도 개발의혹사건(2005.5.25언론보도로 국민에게 알려짐)
  - 김재복 행담도개발사장, 문정인 동북아시아시대위원장·정태인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 관련된 계획
  - 도로공사가 1,000억원 지급 보증하여 호텔 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추진했으나, 자금난으로 중단하여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임.

다. 서남권 발전계획

□ 서남권발전구상은 S프로젝트가 중단된 뒤, 정부가 서남해안지역개발 사업들을 재검토해 마련한 계획으로 2006년 11월 24일 발표하였음.

○ 대상지를 목포·무안·신안으로 좁히면서, J프로젝트의 대상인 영암·해남은 제외하였고,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총22조원 투입 계획.

○ 서남권 발전계획

정부가 예상하는 목포·무안·신안권의 변화			
	2004년		2020년
인구	34만명	➔	57만명
제조업 생산	6500억원	➔	16조원
제조업 고용	6000명	➔	5만7000명
서비스업 고용	7만명	➔	16만2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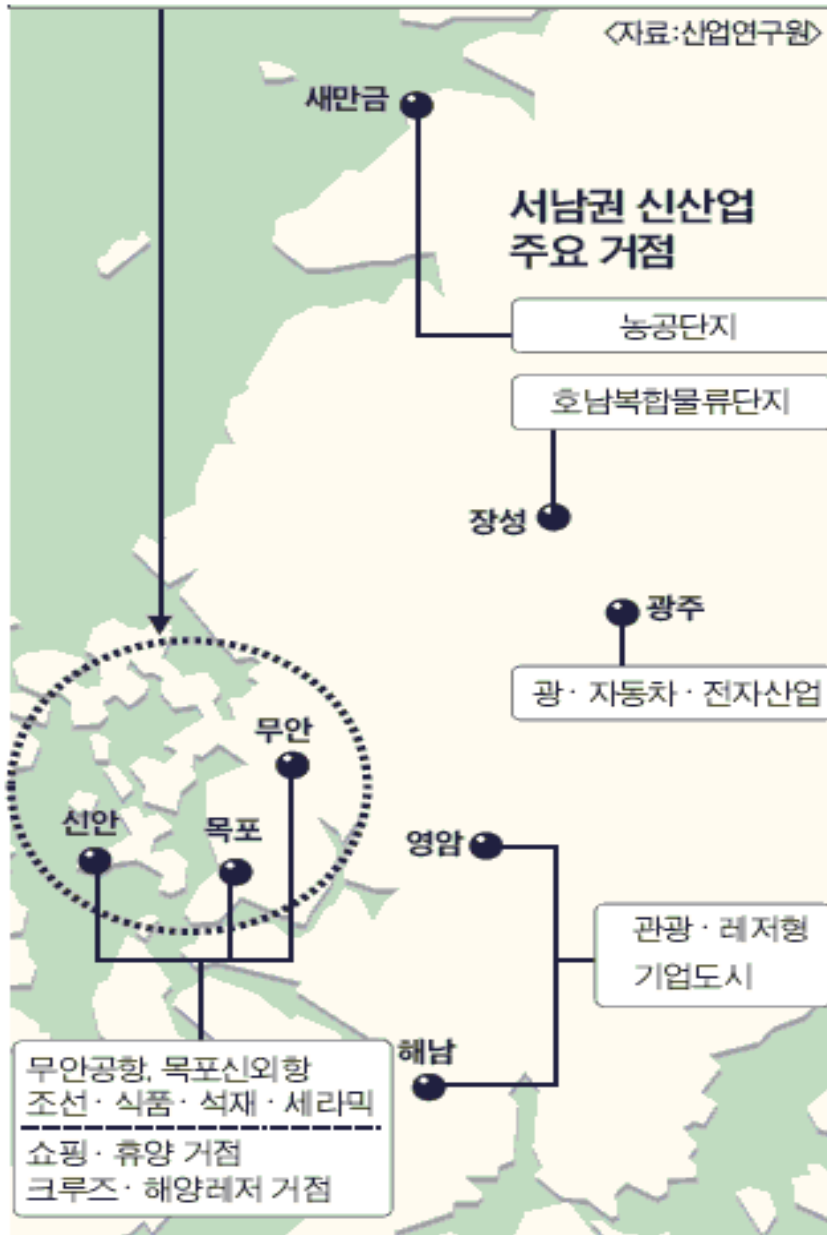
자료: 산업연구원

○ 서남권 종합발전 주요 사업과 투자액

투자 규모		단 계		
		기반조성 단계 (2007~2009년)	투자유인 단계 (2010~2013년)	투자활성화 단계 (2014~2020년)
인프라 사업	15.2조원	3조원 무안국제공항, 무안~광주 고속도로 등	8조원 목포 신외항· 목포항 확장, 목포 ~광양 고속도로, 목포대교 등	4.2조원 목포~보성 간 철도, 호남고속 철도 등
서남권 발전 사업	7.2조원	6000억원 조선산업 혁신 클러스터, 대형 복합면세 쇼핑 단지 등	2.5조원 수출농산물 특화 단지 확장, 창포호 레저단지 조성	4.1조원 다도해 해양관광 복합레저단지조성, 다도해 섬 지역 연 도·연륙교 건설
합계	22.4조원	3.6조원	10.5조원	8.3조원

자료: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서남권 발전계획도



자료 : 산업연구원

## 라. 「서남권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 제정 관련 검토

### (1) 법 제명

#### □ 「서남권 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 제정

- 법안 현재 진행 현황 : 정장선 의원 등 52인 발의, 2007년 4월 2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출, 4월 30일 건교위 및 관련 상임위에 회부, 6월 21일 건교위 상임위 상정-제안 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 향후 일정 : 9월 국회에서 ①건교위 법안소위 상정·심의, 의결, ② 건교위 상임위 전체의결, ③법사위 통과, ④ 국회 본 회의 통과 ⑤ 공포·시행

### (2) 법안의 주요내용

- 제정 취지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된 서남권에 대한 발전 및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전남 목포, 신안, 무안군 지역과 그 인접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구역 지정, 발전촉진지구로 지정 추진, 기존 관련법 의제한 특별법으로 발전 촉진
- 도지사에 개발사업 승인권 부여, 지방채 발행하여 사업재원으로 충당,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입주기업에 대한 주민 우선 고용

### (3) 법안 심사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주도권 확보

- 지자체에 지역발전 계획 및 사업 승인권을 부여하여, 지자체가 사업추진을 주도적으로 행사하게 하며, 재정소요 방안에 대한 재량권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계획과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함.

- 타 지역 대비 특색 있는 기업유치 경쟁 우위 확보 여건 조성 필요

#### □ 주민 참여 보장

- 주민참여의 보장 및 적절한 참여범위 설정으로 사업주체간 이해관계 조정

- 현지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면서 개발 실익의 혜택을 받는 제도를 확보하고 보장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토지 투기바람만 일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가능성 있음.

#### □ 환경문제

- 개발과 보전의 딜레마 속에서, 환경단체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지역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함

-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유지·관리 없이는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사업은 불가능하며, 투자 매력도 떨어지게 됨.

#### □ 지역의 투자 매력화

- 투자 유치는 국경과 지역을 넘어 치열한 경쟁시대이므로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한 투자매력을 지녀야 함.

- 부지의 장기저가 임대나 공급, 정보인프라의 확충,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육상과 해상을 연계한 지리적 이점이 자본 및 기업의 유인책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함.

#### (4) 법 제정 시 예상되는 과제

##### □ 주민 참여 범위와 환경의 보전·유지·관리 문제

- 환경단체 반발과 주민참여가 형식적일 경우, 새만금사업과 같은 중단사태 우려되며, 친환경개발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중장기 지역발전 계획 수립이 되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법 따로, 예산 따로, 현실 따로 되어 사업 추진력이 저하됨.

##### □ 지자체의 추진역량 배가 및 사업 소요재원 문제

-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한계 및 지자체의 재정난 돌파 방안
  - 지방채 조달 및 국고지원 이외,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외국자본 유치, 국내기업 유치, 개인거액투자자 및 독지가 유치, 지자체와 정부, 투자펀드 구성 등 다양한 방식, 컨소시엄 확대 등을 도입해야 함.
- 외국자본이나 국내기업 유치시킬 수 있는 서남지역만의 지역특화 인센티브 설정 문제
  - 내·외국인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한 땅값 저가 또는 무상임대 등의 방안은 이 법의 법안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데 추후 보완 필요.
- 기업을 유치의 장애(규제, 기업정서, 노동시장 유연성, 기업의 자체수익모델, 지역의 기업지원 시스템, 정부의 정책 일관성, 참여업체의 수익보장 등 투자활성화 방안)의 제거
  - 지자체 나름대로 외부용역을 거친 투자유인 및 중장기 계획 수립, 투자비전 제시, 사업을 구체화시켜 속도를 내야 함.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사업 강화로 기업유치에 유리한 각종 인프라 확충 및 일괄행정시스템 구축
  - 지자체장의 역량이 중요, 지자체의 전담행정부서 설치 등

○ 사업의 실무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외부전문가, 내부 지원시스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당정간 협의, 대외 기관, 지자체, 중앙정부와 국회 협력시스템 구축

마. 특별법 제정 현황

□ 특별법의 의미

- 일반법에 비해 미치는 효력이 특정대상과 지역에 한정되는 법을 말하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수많은 일반법의 인·허가를 건너 뛸 수 있어 사업 추진 가속화(노무현 정부 들어 46건의 특별법 제정).

- 균형발전 11건, 부동산 5건, 과거사 청산 6건, 농어촌지원 5건, 인력 6건, 중소기업·재래시장 4건, 환경·문화 4건, 미군부대이전 2건, 기타 2건 등)완료, 국회에 계류중 특별법이 69건

## 균형 발전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 2005년 5월 31일
-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 도시 건설 및 지원 2007.1.11
- 국가균형발전 2004.1.16
- 기업도시개발 2004.12.31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 2005.1.27
-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2005.3.18
- 신행정수도의 건설 2004.1.16
- 제주도 행정체제 2006.1.11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2006.2.21
- 지방분권 2004.1.16
- 지역특화발전 특구 2004.3.22

## 부동산

- 국민임대주택 건설 2003.12.31
- 도시 재정비 촉진 2005.12.30
-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2007.1.19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2005.5.26
- 특정 건축물 정리 2005.11.8

## 중소기업·재래시장

- 재래시장 육성 2004.10.22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 2006.3.3
- 중소기업 인력 지원 2003.9.29
- 지역신문 발전 지원 2004.3.22

## 환경·문화

- 고도(古都) 보존 2004.3.5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2003.12.31
-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2006.9.27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 지역 지원 2005.3.3

## 미군 부대 이전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2006.3.3
-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2004.12.31

## 노무현 정부 들어 제정된 특별법

※날짜는 제정일

### 농어촌 지원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 2004.3.5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 2004.1.29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2005.5.31
- 소형 기선 저인망 어선 정리 2004.12.3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법 2004.3.22

### 인력

-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2004.3.22
-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2004.1.20
- 대학교원 기간 임용제 탈락자 구제 2005.7.13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 2005.5.31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2004.3.5
- 항만 인력 공급 체제의 개편 2005.12.23

### 과거사 청산

- 군 의문사 진상규명 2005.7.29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2004.3.5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 2004.3.5
- 일제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 규명 2004.3.5
-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 규명 2004.3.22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 2005.12.29

### 기타

- 1959년 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 2004.3.2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2006.3.24
- 차관 지원 의료기관 지원 2005.12.7

※내용은 특별법이지만 법 이름에 특별법, 특별조치법, 특례규제법 명칭이 들어가지 않은 법은 제외함

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 지역 관련 특별법안 비교

구 분	서남권발전 특별법(안)	남해안발전 특별법(안)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구역특별법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행정중심복합 도시특별법
사업목적	서남권지역 균형발전	남해안발전	국제자유도시 개발	기업투자활성화 지역균형발전	외국인투자촉진 지역균형발전	행복도시 건설
대상지역	목포, 무안, 신안 인접지역	부산, 전남, 경남	제주도 전지역	수도권·충청권 이외의 지역	기준 없음	충청권 지역
개발구역 규모	제한없음	최소 33만㎡이상	제한 없음	최소 330만㎡이상 (혁신거점형은 165만㎡이상)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지정 신청자	도지사	시·도지사	도지사	민간기업, 지자체	시·도지사	-
지정권자	건교부장관	건교부장관	건교부장관	건교부장관	재경부장관	건교부장관
사업 시행자	국가, 지자체, 공기업, 민간기업	국가, 지자체, 민간기업	지자체, 민간기업	민간기업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구역지정권자가 시행자 지정 (별도제한 없음)	정부투자기관
심의기관	낙후지역발전 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	남해안발전 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	제주국제자유 도시추진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	기업도시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	경제자유구역 위원회 (위원장:재경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 :2인 국무총리, 대통령 위촉자)
시행절차	종합계획수립 →낙후지역발전추진지구투자촉진지구지정, 실시계획	종합계획수립 →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종합계획수립 →시행계획 (개발센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동시에 시행→실시계획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동시에 시행→실시계획	예정지역 지정→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개발계획 수립→실시계획
토지취득 방식	토지면적 1/2 매입, 토지소유자 1/2 동의	토지면적 1/2 매입, 토지소유자 1/2 동의	토지수용가능	토지 1/2이상 매입 시 토지수용	토지수용가능	민간시행 불가
인·허가 등 의제	39개 법률 89개 조항	37개 법률 79개 조항	34개 법률 66개 조항	41개 법률 84개 조항	37개 법률, 70개 조항	41개 법률, 81개 조항
기반시설 비용부담	국고 우선지원	국고 우선지원	규정 없음	국고 우선지원	국고 우선지원	국고 우선지원
조세 감면	법인세소득세 등 8개 감면	법인세소득세 등 7개 감면	법인세소득세 등 7개 감면	법인세소득세 등 7개 감면	법인세소득세 등 7개 감면	별도규정 없음
부담금 감면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부담금 등 6개 감면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등 6개 감면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등 5개 감면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등 5개 감면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등 8개 감면	별도규정 없음
시행여부	국회 계류중	국회 계류 중	시행	시행	시행	시행

※ 남해안발전특별법(안)은 연안발전특별법으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법 제명 변경(자료출처: 박경정 지역개발특별법 비교, 2007.)

□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비교

구 분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지정목적	외국인 친화적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외자유치 및 균형발전 ※ 지정현황 : 3개 지역(인천, 부산, <b>광양</b> )	무관세 등 자유로운 제조, 무역활동을 통한 외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정현황 : 10개소(마산, 익산, 군산, <b>대불, 울촌</b> , 부산항·신항, <b>광양항</b> , 인천항, 인천공항)
근거법률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리주체	지정권자 : 재경부장관(경제자유기획단)	지정권자 : 산자부장관(입지총괄팀)
입주업종	·물류업, 제조업, 관광업 ·외국인전용병원, 약국, 아파트, 학교 등	물류업, 제조업, 수출목적도매업 등
입주자격	·국내외 기업 (외투기업에 대해서만 인센티브 제공)	·제조, 물류, 무역지원 서비스업 (제조업은 외투기업만 허용)
지정위치	국제공항, 국제항만 인근	항만, 공항주변지역, 산업단지
지정절차	시·도지사가 관계기관 협의 → 재경부(기획단)에 지정요청 → 위원회 → 지정고시 → 개발절차 진행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민 등 의견수렴 → 관계기관협의 → 산자부에 지정 요청 → 산자부가 재경부와 협의 → 위원회 심의 → 지정고시 → 개발절차 진행
주요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특례제한법 121조의2 의한 조세감면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3년간 100%</li> <li>·2년간 50%감면(조특법 121조의2)</li> <li>·취득세·등록세, 재산세 : 3년전액, 2년간 50% 감면(단, 자치단체조례에 15년까지 감면가능)</li> <li>- 외투기업에 노동, 수도권규제 완화 등 경영환경 개선</li> <li>- 외국학교, 병원 설립 등 생활환경 개선</li> <li>- 임대료 감면 등</li> <li>·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불구, 매각 또는 대부분은 수의계약가능</li> <li>·국공유재산 50년범위 내 임대가능, 건축허용</li> <li>·국유재산매각금 20년범위 내 분납가능</li> <li>·임대료는 가액의 10/100을 곱한 금액</li> <li>·감면율 100%범위내 국유재산관리청에서 또는 자치단체조례에 의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특례제한법 121조의2 의한 조세감면</li> <li>·관세면제, 부가세 영세율</li> <li>·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3년간 100%</li> <li>·2년간 50% 감면</li> <li>·취득세·등록세, 재산세 : 3년전액, 2년간 50% 감면(단, 자치단체조례에 의거 15년까지 감면가능)</li> <li>- 입주업체 기술개발 등 지원</li> <li>- 임대료 감면 등</li> <li>·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또는 예정 지역안의 토지 공장 등을 임대 매각가능</li> <li>·국공유재산 50년범위 내 임대 및 건축허용</li> <li>·국유재산매입대금 분납가능</li> </ul>

□ 경제특구별 비교표

구분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지역특화발전특구	기업도시
지정목적	외국인 친화적 경영, 생활환경 조성 등을 통한 적극적 외자유치로 동 지역을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	무관세 등 자유로운 제조, 무역활동 보장을 통해 외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천만불 이상 대규모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 부여로 대규모 투자 우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의 자립화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	민간기업 주도로 제조업, 연구개발 분야, 관광레저분야 등에 자족적 도시 건설·운영
지정권자	재경부장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산자부장관	시·도지사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의결)	재정경제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의결)	건교부장관 (문광부장관)
지정위치	국제공항, 국제항만 인근	항만, 공항주변지역, 산업단지	제한 없음	전국 시군구 어디나 가능	낙후지역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균형발전에 기여 필요
입주자격	-국내외기업 (외투기업에 대해서만 인센티브 제공)	제조물류무역지원서비스업 (제조업은 외투기업만 허용)	외국인투자기업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지정현황	-3개지역 인천(8.6지정) 부산, 광양(10.27)	마산, 익산, 군산, 대불, 울촌 부산항·신항, 광양항, 인천항, 인천공항	-개별형 (19곳) -단지형 (10곳) 충남천안, 광주평동, 전남영암, 경남사천, 충북청원, 경북구미, 경기화성, 충남아산, 경기파주, 부산지사	48개 시군구 지정	6개 시범지역 지정 (무안, 무주, 원주, 충주, 태안, 해남·영암)
주요인센티브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외투기업에 노동, 수도권규제 완화 등 경영환경 개선 외국학교, 병원 설립 등 생활환경 개선	관세면제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입주업체 기술개발 등 지원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입주업체 교육훈련, 고용보조금 등 지원	해당 지역별 신청에 따라 법률상 규제특례 인정 (세제혜택은 없음)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국내기업까지 혜택) 사업시행자 토지수용, 출자총액제한 배제, 주택공급기준 별도 설정 등 특례 허용

참고 자료 : 영산강유역 농업개발 추진현황

□ '67년 전남 서남부지역을 대상으로 영산강유역 농업종합개발계획을 입안, '72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추진 ⇒ 정상 추진 중

○ I 단계(배후농지) : '79년 완료(담양호·장성호·나주호·광주호)  
⇒ 34,500ha 개발 전천후 농경지화

○ II 단계(간척+배후농지) : 간척지(5,500ha), 배후지(15,200ha) 완료  
⇒ 20,700ha 개발 등 목포권 산업기반 구축

○ III 단계(간척+배후농지) : 방조제 완공 후 농지조성 공사 중

- 농지조성후 농업인에게 분양완료 : 2,151ha

- 농지조성후 일시경작 : 2,710ha

- 농지조성 공사 중 : 4,469ha

- 미착공지역 : 3,170ha → 현재 가 경작 중

○ IV 단계(배후농지) : '01년 공사 착공후 용수로 등 시설 공사 중  
⇒ 16,730ha 배후농경지 사계절 관개용수

□ 단계별 추진현황

구 분	계	I 단계	II 단계	III 단계			IV 단계
				소계	III-1지구	III-2지구	
개발면적(ha)	92,930	34,500	20,700	21,000	13,160	7,840	16,730
- 간 척	18,000	-	5,500	12,500	7,960	4,540	(21,690철회)
- 육지부	74,930	34,500	15,200	8,500	5,200	3,300	16,730
○ 사업기간	'72~2012	'72~'79	'76~'98	'85~2012	'85~2010	'89~2012	'01~2010
사업비(억원)	23,415	812	3,823	11,576	7,124	4,452	7,204
- '06까지	11,972	812	3,823	6,517	4,100	2,417	820
- '07예산	761	-	-	551	251	300	210
- '08이후	10,682	-	-	4,508	2,773	1,735	6,174

## 국회의원 김 홍 업

---

- 무안 사무소 :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22-15 우가 2층  
Tel. 061-453-9911, Fax. 061-453-9655
- 신안 사무소 : 전남 목포시 향동 6-17 3층  
Tel. 061-245-0053, Fax. 061-245-0056
- 국회의원회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28호  
Tel. 02-788-2258, Fax. 02-788-3428